

경기도 공고 제2024 - 6229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효력재개 정정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3-6226호(2023. 12. 21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 효력 재개 사실을 「행정절차법」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며 아울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21일
경기도지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영업정지 잔여기간)	효력재개 사유
(주)성공토건 (이지훈)	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454번길 11, 4층(증포동)	토목건축 공사업 (11-0080)	영업정지 4개월 (2024. 12. 22. ~ 2025. 4. 21.)	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른 효력재개 (판결선고일 2024. 11. 21.)

※ 정정사유 : 공고번호 및 공고일 정정